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 징계위원수 3인에서 5인으로 증원 및 민간위원 포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2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 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생략)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2.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1962년 제정된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제59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2년 개정된 「군인사법」(법률 제4506호) 제59조 제2항은 하사관(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위원에 하사관을 포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 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 대상자가 하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하사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한다.”라고 개정함.

이후 2015년 개정된 「군인사법」(법률 제13505호)에서 현재와 같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8조의2제2항).

□ 군인의 징계위원회 위원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소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대·대대·여단·사단·군단급 단위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중대급 단위의 소규모 부대에서는 징계위원의 자격을 가진 장교, 준·부사관의 수가 적어 다른 부대의 위원자격자를 섭외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마저도 최소 위원 수를 그때그때 충족하기 어려워 여러 건의 징계 사건을 한꺼번에 몰아 심의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징계위원의 수를 3인 이상 → 5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구성시에는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풍부한 관련 지식과 경험 있는 징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수를 3인 이상 → 5인 이상으로 개정 시 현행 국가공무원과의 연간 징계건수를 비교할 때 군 간부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횟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군 본연의 임무에 대한 업무공백이 우려될 수 있음.

[2023년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연간 징계건수]

구분	군인	국가공무원	
		병사	간부(군인)
징계건수	43,439	40,475	2,964

또한, 군인 징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의 자격을 설정하기 쉽지 않고, 도서·산간·격오지에 있는 부대일수록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어서 특정 인원만이 징계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개정안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라고 규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대한민국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¹⁾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²⁾.

□ 국방부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써, 그 이유로 ① 징계의 대부분은 병사의 경미한 규정위반에 대한 사안으로 3인의 징계위원으로도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며, ② 중대급 단위의 소규모 부대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어려움, ③ 적시에 징계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도 적시에 징계처분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지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점을 들고 있음.

또한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는 데 있어 ‘징계권’은 원활한 부대 지휘를 위하여 지휘관에게 부여된 지휘권³⁾의 일종인데 외부

1)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3) 「군인사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의 범위

민간위원의 의결권 행사로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징계권자	징계심의대상자	징계 범위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장성 포함한 모든 군인	중·경징계
사단장(장성급 여단장), 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기관의 장	영관급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중·경징계
연대장, 합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기관의 장	영관급 이하 장교, 준사관	경징계
	부사관, 병	중·경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기관의 장	부사관	경징계
	병	경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기관의 장	병	경징계